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http://www.mnd.go.kr

2015년 12월 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월 2일(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산업부 디자인생활산업과 김규성 과장(044-203-4370), 류재형 사무관(4371)
~~국방부총수명주기관리팀 곽병호 과장(02-748-5680), 이낙형 중령 (02-748-5687)~~

이제 군수품도 디자인 시대!

- 산업부-국방부, 군수품의 디자인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 12. 2(수)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활용한 군수품 품질개선사업'** 착수보고회 및 상호협력 협약서(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약 16개월간 총 6억원*을 투자하여 군수품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 산업부, 국방부가 각 3억원씩 투자

□ 동 사업은 **디자인을 활용**하여 **사용자 가치(User Value)**를 중심으로 **군수품을 개선**함으로써, 군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공동협력사업이다.

○ 군수품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되는데, **전력지원체계***는 장병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고 사용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품목**들이 포함되어 군 장병의 사기와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품목이다.

* 전투수행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지속적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부품), 물자, 일반시설, 자원관리 및 기반체계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칭

○ 전력지원체계는 그간 보급여부, 기본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사용자 중심의 질적 개선은 더딘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장병들의 만족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여 단순 외관·기능 개선을 지양하고, 군 장병이 실제 불편해하는 사항을 실증적으로 심도있게 관찰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 서비스디자인 : 수요자가 문제를 겪으며 느낀 경험과 감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 등을 개발하는 방법론

□ **국방부**는 각 군에서 제기한 수요를 토대로 총기멜빵끈, 야전삽 등을 개선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대상 품목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다.

□ 앞으로 국방부는 기품원을 통해 산업부에서 개발한 시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부대시험평가**를 거쳐 국방규격을 개정하고, 디자인 개발 관련 지식재산권을 우수 민간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군수품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국방부와 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군수품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적으로 **민·군 디자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 복무여건 개선, 최상의 전투력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방디자인 분야(Military design) 개척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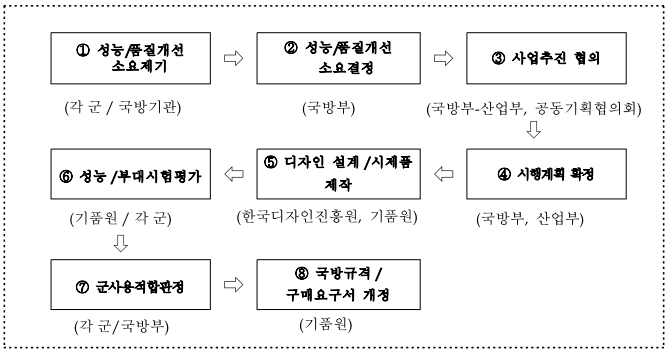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류재형 사무관(☎ 044-203-4371), 국방부 이낙형 중령(☎ 02-748-56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 **사업현황** : 국방부(국방기술품질원) - 산업부(한국디자인진흥원) 공동협력

* 디자인 기획·조사시부터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시까지 디자인진흥원, 국방기술품질원 지속적 협업 추진

□ **사업 수행절차**



○ 대상품목 선정 : 각 군 및 국방기관의 소요제기를 통한 소요결정 선정

○ 사업추진 협의(③) : 산업부·국방부 사업비 규모, 사업추진일정 등 협의

○ 디자인 설계(⑤)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하여 군 장병 경험을 조사·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디자인 도면설계 및 시제(프로토타입) 제작

* 수요자 경험, 감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디자인을 개발하는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적용

○ 시제품 제작(⑤) : 개선된 도면 및 구매요구서와 제작된 시제(목형)에 따라 성능시험 및 부대시험용 일정수량(수백개) 시제품 제작

○ 성능시험평가(⑥) : 성능시험 주관, 시험실시, 시험평가 참여, 보완시 제품 제작, 규격/도면/구매요구서 개정 및 보고(기품원 수행)

○ 부대시험평가(⑥)) : 각 특성에 맞게 평가, 군사용가 판정(각 군 수행)

□ **개선대상 품목**

구분	품명	현실태	개선 필요사항
1	**총기 멜빵끈**	○ 기동성, 안정적 사격자세 유지 불편, 완전군장 이동 등에서 불편	○ 형상 개선 (완전 군장 착용하 활동 및 구보시 총기 안정적 유지 기능)
2	**야전삽**	○ 삽 전장길이가 짧아 기능성 떨어짐 ○ 동계 결빙지 작업시 손에 충격이 크고, 굴토가 잘 안됨	○ 접이식 구조, 길이 조절가능토록 개선 ○ 가볍고 내구성 강한 소재로 개선 ○ 곡괭이, 정글도 기능 추가
3	**방한장갑**	○ 방한장갑 착용시 보온성이 떨어짐 ○ 활동성이 떨어져서 근무 중 장갑을 벗어야 하는 불편	○ 전투 활동성 및 경량성, 보온성 등 향상토록 개선
4	**방탄헬멧 위장포**	○ 방염성이 없는 원단으로 운용 ○ 위장포가 잘 벗겨짐	○ 위장포에 난연성 부여 및 운용성 향상토록 개선
5	**안면보호 마스크**	○ 궤도차량 내부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방염성 추가 필요	○ 보온성, 난연성 향상되도록 방한용 안면마스크 개선 필요

<참고자료 #2>

창조국방과 창조경제를 위한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간
디자인 기술 협력에 관한 협약서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 군수품 품질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방부와 산업부가 대한민국 국군이 사용하는 군수품의 품질개선시 디자인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전투력 향상과 국방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부처는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부처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부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1. 국방산업발전을 위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2. 군수품 획득시 디자인 기술을 활용하는 공동정책 수립 및 공동기획
3. 상호이전 가능한 국방기술 및 산업기술 정보교류
4. 군수품 품질개선시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 공동 기술협력
5. 산·학·연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추진
6. 군수품 상용화 또는 상용기술 활용시 디자인 기술 협력
7. 디자인 기술협력 결과물을 민간에 제공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획득 추진
8. 기타 양 부처 혁신을 위해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운영) 실무위원회는 양 기관 소속 각기 5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며,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연구장비 및 시설의 활용 협조)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구장비 및 시험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소요 되는 경우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협의 조정) 본 협약 내용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거나 추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세부 업무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비용 부담)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제9조(기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하여 인지한 상대기관의 제반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본 협약서는 협약 체결 직후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매년 자동 갱신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갱신 정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협약 해지 계획 및 사유를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협의의 필요성이 해소되는 등의 경우

제12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9조(기밀유지)를 제외하고 쌍방간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13조(기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2월 2일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 방 부 군 수 관 리 관
박 병 기

국방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MOTIE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정 대 진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여